

kiri Weekly

2012.6.18 제187호

이슈

일본의 지급여력제도 변화와 시사점

포커스

일본의 민영 건강·간병보험료 소득공제제도 신설 주요내용

금융보험 해설

손해보험의 이해 6: 위험의 보유와 재보험

국내금융 뉴스

금융위, 변액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IMF, 2012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가능성 시사

해외금융 뉴스

북미 _ 미 가계 순자산, 1990년대 초반 수준으로 감소

유럽 _ 유로존 해체 가능성 확산

일본 _ 일본 국토교통성, 이란산 원유 수송 유조선에 선박보험 제공

중국 _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확대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일본의 지급여력제도 변화와 시사점

장동식 수석연구원

요약

- 일본 금융청은 자본인정 기준 강화, 리스크 측정 기준 및 방법 개선 등을 위한 지급여력제도 개선안을 2012년 4월부터 보험회사에 적용하기 시작함. 반면에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최근 자본계층화 및 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RBC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

가용자본 측면에서는 대화생명의 파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서 제기된 자본의 질(Quality) 제고를 위해 일부 계정에 대해 가용자본 인정 한도를 적용하고, 실현되지 않은 장래이익은 가용자본에 가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함.

요구자본에 대해서는 금융위기, 최근 경영환경 및 경영실적, 보험회사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신뢰수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위험계수를 조정하였고, 신용스프레드 리스크를 평가항목에 추가하였으며, 신용리스크 및 가격변동리스크 계상 방법을 변경하기로 개정하였음.

또한, 필드 테스트를 통해 자산과 부채의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제도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식과 실행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보험업계의 의견을 파악하였음. 그 결과 첫째, 보험회사들은 이 제도를 국제적 정합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둘째, 보험회사들은 제도 도입을 위해서 국제 동향 모니터링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명확한 로드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본 금융청의 지급여력제도 개정은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최근 자본계층화, 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RBC제도) 개선, 국제 공통 평가기준 대응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첫째, 자본계층화에 대한 국제기구 및 유럽의 권고뿐만 아니라 자국 보험산업의 실태를 고려한 일본의 평가 및 개선에 대해서도 정책적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둘째, 보험회사의 최근 경영 실적을 지급여력제도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경제적 가치 기반의 지급여력제도 도입은 중기과제로 접근하고, 국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전문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국제적 정합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일본 금융청은 지급여력제도 개정안을 2012년 4월부터 보험회사에 적용하고 있음.

- 일본의 지급여력제도는 가용자본(순자산, 준비금 등)과 요구자본(통상의 예측을 초과하는 위험)을 이용하여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는 제도로서 1996년에 도입되었음.
- 가용자본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 및 법인세효과상당액,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책임준비금, 부채성자본 등에 대한 요건을 일부 개정하였음.
- 또한, 요구자본과 관련하여 위험계수 산출 기초자료 및 신뢰수준, 헤지거래의 위험경감효과 및 증권화상품 등의 위험계수 등에 대한 요건을 일부 개정하였음.

■ 이러한 개정은 아마토생명의 파산 사례¹⁾ 및 금융위기 경험, 최근 경영환경·경영실적 반영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임.

- 아마토생명은 보험계리사의 권고에 따라 추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전액 가용자본으로 계상하였는데, 파산 과정에서 추가 적립된 책임준비금의 손실 흡수 능력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었음.
- 금융위기 과정에서 헤지거래, 증권화상품, CDS거래, 금융보증보험 등과 관련된 리스크에 노출됨.
- 개정 이전 요구자본 관련 위험계수는 보험회사들의 최근 실적을 반영하지 않아 보험회사의 리스크 상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한편, 경제적 가치 기반의 지급여력제도 도입에 필요한 감독목적의 과제를 파악하고자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필드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이 제도가 국제적 정합성 및 제도의 신뢰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 보험회사들은 이 제도를 국제적 정합성 및 제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보험회사들은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국제 동향 모니터링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명확한 로드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 아마토생명은 금융청에 보험사업 정지를 신청함과 동시에 동경 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2008년 10월에 신청함. 이상우(2008. 10. 20), 「일본 아마토생명의 파산원인과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 일본 금융청의 지급여력제도 개정은 우리나라 감독당국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위기대응능력 강화, 리스크 중심 감독제도 선진화, 국제적 감독 역량 강화 등을 2012년 보험감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²⁾
- 이를 위해 자본계층화, 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RBC제도) 개선, 국제 공통평가기준 대응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보험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일본 금융청의 지급여력제도 개선안은 우리나라 감독당국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일본 지급여력제도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지급여력제도 개정은 자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자본인정 기준 강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요구자본 관련 이슈를 반영한 리스크 측정 기준 및 방법 개선, 지급여력비율의 적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자본인정 기준 강화는 야마토생명의 파산,³⁾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서 나타난 가용자본 관련항목의 손실 흡수 능력 제고를 반영한 결과임.
 - 보험회사의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자본을 구분하여 상시 사용 가능한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임.
- 리스크 측정 방법 개선 및 지급여력비율의 적정성 확보는 금융위기의 교훈 및 국제기구 논의 등에서 제기된 요구자본 관련 이슈를 반영한 결과임.⁴⁾
 - 리스크별 위험계수 조정과 관련하여 신뢰수준의 상향 조정, 최근 경영실적 반영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며, 또한 지급여력비율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보험계리사의 확인 의무 도입 필요성을 반영한 것임.

2) 금융감독원(2012), 『2012년 보험감독업무 추진계획』(2012년 보험감독·검사 업무설명회 자료).

3) 야마토생명의 경우 보험계리사의 권고에 따라 추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전액 지급여력금액으로 계상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지급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었으나 파산하였음.

4)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금융위기의 경험을 고려하여 증권화 상품, CDS 거래, 금융보증보험 등의 위험계수 강화를 추진함.

가. 가용자본 개정: 자본인정 기준 강화

■ 일본 금융청은 잉여금(보험료 적립금 등), 부채성 자본 등의 가용자본 인정 한도를 설정함.

- 이 항목들은 손실 흡수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부채라는 점을 고려하였음.
 - 잉여금(보험료 적립금 등) 중에서 보험계리사의 권고 등에 기초한 채무이행 관련 부분은 전액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이를 제외한 보험료적립금등잉여금, 부채성 자본 등은 핵심자본 한도로 가용자본으로 인정.

〈표 1〉 일본 지급여력제도의 가용자본 관련 주요 개정

구성항목	현행	개정
보험료적립금등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상당액 초과 적립금)	• 해약환급금상당액 초과 적립금 100%	• 보험계리사의 권고 관련 초과적립금: 감안 없음 • 보험계리사의 권고 외 초과적립금: 핵심자본 ¹⁾ 한도 ²⁾ (법인세효과상당액과 합산한 금액 기준)
법인세효과상당액 (과세소득 축소)	• 100%	• 핵심자본 한도
이연법인세자산	(신설)	• 불산입금액 ⁴⁾ • 신설 보험회사 제외
장래이익	• MIN(과거 5년간 계약자배당 준비금 전입액 평균, 최근 계 약자배당준비금 전입액)×50%	• 감안하지 않음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등	• 산입한도액 ⁵⁾ (신설)	• 핵심자본 한도 • 특정부채성자본조달수단 제외

주: 1) 보험회사가 건전성 향상 등을 위하여 기초율을 변경하여 추가로 적립한 경우와 표준책임준비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함.

2) 핵심자본은 순자산(평가차액, 이연자산 등 제외), 가격변동준비금, 위험준비금 및 이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상당액 초과 적립금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3) 이연법인세자산의 불산입금액은 가격변동준비금·보험계약준비금·평가환산차액위험 등과 관련 없는 이연법인세자산에서 순자산 및 각종 준비금 등의 20%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여기서 순자산(평가차액, 이연자산 등 제외) 및 각종 준비금 등은 가격변동준비금, 위험준비금 및 이상위험준비금, 책임준비금 중 해약환급금 초과적립금 및 계약자배당준비금 중 미할당액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타유가증권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4) 산입한도액은 자본(사외유출 분 제외), 가격변동준비금, 위험준비금, 이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상당액 초과 적립금, 만기환급적립금 일부, 미할당 배당준비금 등을 합산한 금액.

자료: "保険会社の資本金, 基金, 準備金等及び通常の予測を超える危険に相当する額の計算方法等を定める件 (平成八年大蔵省告示第五十号) の一部改正"(<http://www.fsa.go.jp/news/21/hoken/20100409-2.html>), 일본 금융청(2010).

- 이연법인세자산 및 법인세효과상당액에 대해서는 손실 보전에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용자본 반영에 한도를 설정함.
 -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 가격변동준비금·보험계약준비금·평가환산차액위험 등과 관련 없는 이연법인세자산에서 순자산 및 각종 준비금 등의 20%를 차감한 금액을 불산입금액으로 설정함.

- 법인세효과상당액의 경우 개정 전과 달리 핵심자본 한도로만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음.
- 장래이익은 손실 흡수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행 제도의 신뢰성 향상이라는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가용자본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 장래이익의 반영여부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감독당국 간에 의견이 상충되었는데, 보험회사들은 유럽의 사례를 제시하며 장래이익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감독당국은 장래이익이 손실 흡수 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현행 지급여력제도의 신뢰성 측면에서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향후 경제적 가치기반의 지급여력제도 도입을 검토할 경우 다시 검토하기로 함.
- 가용자본 관련 개정은 일본보험회사에게 자기자본 확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나. 요구자본 개정: 리스크 측정 기준 및 방법 개선

■ 일본 금융청은 금융위기 경험, 상향된 신뢰수준, 최근 경영환경·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험계수를 다시 계상하고, 신용스프레드 리스크 등을 적용하기로 개정함.

- 위험계수가 보험회사의 경영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근 경영 실적⁵⁾과 상향된 신뢰수준(90% → 95%)을 적용하여 다시 계상하였으며, 이는 요구자본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⁶⁾
-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고려하여 증권화상품 및 금융보증보험의 위험계수⁷⁾를 계상하였으며, 이 역시 요구자본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가격변동 등 리스크의 경우 분산투자효과반영방식을 회사특성(자산구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고, 이는 회사특성에 따라 요구자본 증가 또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⁸⁾
- 기존과는 달리 헤지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위험경감효과로 인정하였으며, 이는 헤지 효과 없는 위험경감수단을 보유한 보험회사에게는 요구자본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⁹⁾
- 이와 같은 요구자본 관련 개정은 가용자본 마찬가지로 일본 보험회사에게는 자기자본 확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5) 예정이율리스크의 위험계수는 최근 10년간 각종 인덱스 기반 수익률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회사의 자산구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다시 계상. 최저보증리스크의 위험계수는 가격변동 등의 리스크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가정을 적용함.

6) 위험계수신뢰수준은 90%에서 95%로 강화되었지만, 이는 유럽(Solvency II)의 신뢰수준(99.5%)보다 낮은 수준임.

7) 구조화상품의 위험계수는 은행의 위험계수를 준용함.

8) 기존에는 생명보험 30%를, 손해보험 2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었음.

9) 야마토생명 파산 경우에는 실제로는 헤지 효과가 거의 인정되지 않았음.

〈표 2〉 일본 지급여력제도의 요구자본 관련 주요 개정

구성항목		현행	개정
측정 기준 (신뢰수준 및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뢰수준: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뢰수준: 95% 통계자료: 최근 경영실적
측정 방법 등	가격변동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자산: 대출, 채권, 예적금, 단기투자상품 리스크 상당액: 대상자산의 금액 × 리스크 계수 × 분산효과 분산효과: 생명보험 30%, 손해보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자산: 대출·채권·예적금, 증권화상품, 재증권화상품, 단기투자상품 리스크 상당액: (대상자산의 금액 - 파생상품 잔액) × 리스크 계수 - 분산효과 분산효과: 자산구성비, 자산별 리스크계수 및 자산 간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계상
	신용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크 상당액: - 대상자산의 금액 × 리스크 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크 상당액: - 금융보증 외: 대상자산의 금액 × 리스크 계수 - 금융보증: 보증금액 × 리스크 계수 - 미경과보험료
	신용스프레드 리스크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스크 상당액: - 대상자산의 금액 × 리스크 계수

자료: "保険会社の資本金, 基金, 準備金等及び通常の子測を超える危険に相当する額の計算方法等を定める件 (平成八年大蔵省告示第五十号) の一部改正"(<http://www.fsa.go.jp/news/21/hoken/20100409-2.html>), 일본 금융청(2010).

3. 경제적 가치 기준의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인식(필드 테스트)

가. 배경 및 목적

■ 경제적 가치 기반의 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사의 계속성을 전제로, 경제적 가치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자본량과 리스크 양을 정량화하여 비교하는 제도임.

- 보험관련 국제기구들은 계약자 행동, 기초율, 할인을 등과 관련한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경제적 가치 기반의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¹⁰⁾

10)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자산부채 및 위험을 현재의 경제적 가치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재무상황을 적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 인식 하에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총 대차대조표 접근법”에 의한 자본적정성을 권고하고 있음. 현재 유럽(Solvency II)도 총 대차대조표 접근법을 권고하고 있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도 경제적 가치 기반의 지급여력제도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보험부채 평가에 대한 논의 및 검토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음.

- 일본 금융청 및 보험회사들은 이 제도를 보험회사의 리스크 측정 및 관리를 제고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함.
- 일본 금융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09년에 보험회사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 일환으로 필드 테스트를 2010년에 실시함.

〈표 3〉 경제적 가치 기준의 지급여력제도 관련 주요 논점: 보험부채 평가 중심

구분	주요 논점
계약자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정 • 보험료수입, 보험금지급, 해약, 실효, 갱신 전환 등의 반영 방법 • 객관성 및 신뢰성의 확보, 모델 리스크 등
기초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데이터의 반영, 비시장데이터의 취급 정합성(整合性) • 검토 시점 및 트리거 요건, 일시적 경제변동 등 반영 여부
할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인율 산정방법, 시장데이터의 반영, 비시장데이터의 취급 정합성 • 이차배당과 관련한 유배당계약 할인율
신용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 신용도의 할인율 반영 여부 • 신용도 반영 영향 및 보험부채 변동 평가
리스크 마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 마진 산정방법, 유출가치, 유입가치
유배당계약의 장래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입 여부, 계상방법, 장래배당금 측정방법, 리스크마진 등과의 관계

자료: "經濟価値ベースの健全性評価について", ソルベンシー・マージン比率の算出基準等に関する検討チーム 第5回議事, 庄子浩(2007).

■ 필드 테스트 목적은 경제적 가치 기준의 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응 현황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임.

- 필드 테스트를 위해 계상방법, 금리수준, 위험계수 등의 전제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조건에 대해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및 유럽 등의 검토 내용과 일치한다고 설명함.
-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 기준의 보험부채 평가와 자산부채의 일체적인 금리리스크를 측정하고 문제점을 조사하고자 함.
- 또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방법 및 내부모형에 대한 질적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하고자 함.

나. 보험업계의 의견

■ 경제적 가치 기반의 지급여력제도 도입에 앞서 자산부채종합관리(ALM)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 일본 보험회사들은 이 제도하에서는 자산 및 부채 모두를 경제적 가치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고, 아울러 자산부채종합관리(ALM)의 촉진 및 리스크관리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그렇지만 일본 보험회사들은 종신보장 니즈 및 불충분한 초장기 채권 등으로 인해 제도의 효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이러한 인식 하에 일본 보험회사는 금융청에 경제적 가치 기반의 보험부채 평가에 있어서 평가목적 및 평가용도를 명확히하고, 제도의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보험부채평가와 관련한 물적·인적 자원 확보의 필요성, 내부모형 관련 측정방법, 감독승인 기준 등에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함.
- 경제적 가치 기준의 보험부채 평가에 있어서 시간적·인적, 물적 자원의 필요성을 제시함.
 - 특히 보험부채 계상에 필요한 장래현금흐름 측정에는 상당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부 보험회사들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험부채평가방법을 금융청이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내부모형과 관련해서는 측정의 신뢰성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아울러 현재 많은 보험회사들이 내부모형을 이미 사용하고 있으므로 내부모형 제도의 도입에 앞서 내부모형승인 기준을 감독당국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전문기관과의 연계, 국제적 동향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있음.
- 경제적 가치 기반의 보험부채평가에서 여러 보험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계약자행동, 기초율, 할인율 등에 대한 논점들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국제적으로도 IFRS의 검토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그리고 경제적 가치 기반의 지급여력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회사의 경영기법 및 리스크관리 기법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로드맵 공개 등을 통해 제도적 이슈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함.

4. 시사점



-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자본계충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솔벤시Ⅱ 및 바젤Ⅱ의 자본계충화뿐만 아니라 일본 금융청의 자본계충화관련 평가 및 개선에 대한 정책적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국제기구(예: 바젤Ⅱ 등)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높은 손실 흡수 능력을 지닌 자본 위주로 자본구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독기준을 제시함.
 - 유럽(솔벤시Ⅱ)은 스트레스 시의 손실 흡수 능력을 토대로 하는 자본계충화를 도입함.
 - 일본 금융청은 손실 흡수 능력을 고려하여 핵심자본을 정의하고, 장래이익을 가산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요구자본 계상 시 보험회사의 경영 실적을 반영하는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요구자본의 계상에 있어서 감독당국은 점차 보험회사의 경영 실적 반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 유럽(솔벤시Ⅱ)은 보험회사에게 내부모형뿐만 아니라 표준모형과 보험회사의 경영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모수(USP)¹¹⁾를 적용하여 요구자본(SCR)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은 표준모형에 의한 요구자본 계상 시 가격변동리스크에 보험회사의 경영 실적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모형의 도입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유럽 및 일본처럼 내부모형 도입 검토뿐만 아니라 표준모형에 보험회사의 경영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 정합성 및 지급여력제도의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 기준의 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 유럽(솔벤시Ⅱ) 및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경제적 가치 기준의 지급여력제도에서 핵심이 되는 보험부채평가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 유럽은 옴니버스Ⅱ 지침 제정안을 통해 보험부채평가에 대한 경과기간을 설정하고자 함.

11) undertaking specific parameters.

-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경제적 가치 기준의 지급여력 제도의 핵심인 보험부채평가와 관련된 프로젝트(IFRS 4 Phase II)를 2015년 이후까지 진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이에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국제적 정합성 및 지급여력제도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일본의 사례와 같이 경제적 가치 기준의 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제도에 대한 목적 및 용도를 명확히하고, 아울러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하여 보험회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kiri**